

## 【 ' 08년 상반기 세법개정안】

정부가 법인세율을 3% 포인트 낮춰 올해 사업연도 법인세를 모두 1조7000억원 깎아준다. 2단계 인하시기도 2년이나 앞당겨 2010년에 한차례 더 법인세 인하가 단행된다.

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세법 및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.

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사업연도 법인세부터 세율이 3% 포인트 낮아지고, 낮은세율 적용구간도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넓어진다. 이에 따라 현재는 과표 1억원 초과시 법인세율 25%, 1억원 이하는 13%였던 것이 각각 과표 2억원 초과 시 22%, 2억원 이하는 11%로 떨어진다.

### ❖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상향조정(법인세법 55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 ○ 과세표준 1억원 초과 : 25%  ○ 과세표준 1억원 이하 : 13%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 ○ 과세표준 2억원 초과 : ( '08귀속) 22% ⇒ ( ' 10귀속) 20%  ○ 과세표준 2억원 이하 : ( '08귀속) 11% ⇒ ( ' 10귀속) 10%

이어 2010년에 법인세를 한차례 더 낮춘다. 과표 2억원 초과는 20%, 2억원 이하는 10%로 내려간다. 당초 2012년까지 2단계인하를 완료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2년 앞당겼다.

**인하된 법인세율은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된다. 올해 중간예납 하는 세금도 인하된 세율 기준으로 낸다.** 재정부는 "경기가 상당히 어렵다"며 "경제 상황에 따라 할 수 있는 조치는 가급적 조속히 하겠다는 취지"라고 밝혔다.

법인세율 인하에 맞춰 최저한세율도 2단계로 내린다. 중소기업은 현행 감면전 과세표준의 10%에서 올해·내년은 8%, 2010년부터는 7%로 낮아진다. 일반기업은 현행 감면전 과세표준의 13%(1000억원까지)에서 올해와 내년은 11%, 2010년부터는 10%로 낮아진다. 1000억원 이상은 현행 15%에서 각각 14%와 13%로 낮아진다.

❖ 법인의 최저한세 인하(조세법 132①)

현 행	개 정 안
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최저한세율 ○ 중소기업 : 감면전 과세표준 x 10%  ○ 일반기업 - 감면전 과세표준(~1천억원) x 13% - 감면전 과세표준(1천억원~) x 15%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의 최저한세율 인하 ○ 중소기업 : (' 08·' 09년) 8% ⇒ (' 10년~) 7%  ○ 일반기업 - (' 08·' 09년) 11% ⇒ (' 10년~) 10% - (' 08·' 09년) 14% ⇒ (' 10년~) 13%

재정부는 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근로자 한명당 30만원의 세액공제도 해주기로 했다. 2007년말 고용중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하며, 2009년말까지 한시 적용이다.

이밖에 연구개발(R&D)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현행 투자금액의 7%에서 10%로 높아진다. 조세특례제한법도 고쳐서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협력 투자해 받는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한다. 또 올해 사업연도분부터 금융사가 휴면연금관리재단에 출연한 비용을 전액 손비인정해 주기로 했다.

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과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, 오는 24일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.